

-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

활 동 계 획 [안]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목 차

I. 특위 구성 및 운영현황	1
1. 구성 개요	
2. 활동 대상기관 및 분야(사무범위)	
3. 구성이유	
4. 중점 활동 방향	
5. 행정사항	
II. 주요 활동계획	3
1. 관련기관 업무보고 청취	
2.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관련 현황조사 및 정책자료 수집	
3. 타 시·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지 등 방문 및 대응 협력	
4.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5. 전북특별자치도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6. 초고압 송전선로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건의	
7. 언론·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8. 특위 활동을 위한 추가 필요사항 결정	
III. 세부 활동계획	5
IV.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V. 기타 참고 자료	7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I 특위 구성 및 운영현황

1. 구성 개요

- 명 칭 :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11명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9) ※ IV. 위원 명단 참조
- 활동기간 : 2025. 4. 23. ~ 2026. 4. 22.(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13조(부위원장)

2. 활동 대상기관 및 분야(사무범위)

- 기 관 : 국회,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 분 야 : 초고압 송전선로 관련 사무 일체

3. 구성 이유

- 전북 대부분 시·군 지역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예정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정작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혜택은 수도권과 일부 기업들이 누리지만, 정작 전북도민들은 무리한 수목 벌채로 인한 산림파괴, 주변 경관의 훼손, 생태계의 교란, 재해 시 농경지 피해, 지역 주민과 가축에 대한 전자파 피해, 지가하락과 지역발전 저해 등 심각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도내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도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4. 중점 활동 방향

- 전북도내 송전선로 건설 관련 현황조사 및 여론 수렴
- 송전선로 지중화 및 해상연결 HDVC 도입 등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산지소 등 분산에너지 정책 촉구 활동
- 전력수요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 중앙부처 및 국회, 소관 기관 방문 활동
- 정치권과 연대한 송전선로 건설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초고압 송전선로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와의 협력 대응 등

5. 행정 사항

- 의회사무처 부서별 협조 사항
 - 총무담당관실 : 의정활동 예산 및 차량 지원 등
 - 의정홍보담당관실 : 언론기관 홍보, 활동사진 촬영 지원 등
 - 의사담당관실 : 속기 및 기록관리 지원
 -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특위활동 전반 사항 지원
 - 전문위원(1명), 경제산업건설팀장(1명), 직원(8명)

Ⅱ 주요 활동계획

1. 관련기관 업무보고 청취

- 보고시기 : 2025. 7월 중
- 보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미래첨단산업국 등)
- 참석대상 : 특위 위원, 미래첨단산업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및 추진 현황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 주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관련 동향 및 추진 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

2. 타 시·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지 등 방문 및 대응 협력

- 추진기간 : 2025. 7. ~ 2026. 3월 중 실시
- 방문기관 : 경남 거창, 전남 장성, 충북 충주 중 1택
- 주요내용 : 타 지자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지 방문 및 공동 대응 협력 등

3.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 추진기간 : 2025. 7. ~ 2026. 4월 중 실시
- 주요내용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대응 방안 마련 등

4. 전북특별자치도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 추진기간 : 2025. 7. ~ 2026. 5.
- 활동대상(설득대상)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전북 관련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비례대표/연고)
 - 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등)

○ 주요내용

- 정부·중앙정치권·한전·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주민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설득 활동

5. 초고압 송전선로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건의

- 추진기간 : 2025. 7. ~ 2026. 5.
- 대상기관 : 국회, 정부부처 등
- 주요내용 : 초고압 송전선로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

6.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관련 현황조사 및 정책자료 수집

- 추진기간 : 2025. 5. 7. ~ 2026. 5. 6.(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주요내용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황 및 계획 파악,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여론 조사,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책자료 수집

7. 언론·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 전개

- 추진기간 : 2025. 5. 7. ~ 2026. 5. 6.(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추진방법 : 언론보도, TV·라디오 방송 출연, 기고, SNS 등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국회 방문, 특위 활동 사항 적극 홍보 등

8. 특위 활동을 위한 추가 필요사항 결정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사무 중 활동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무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Ⅲ 세부 활동계획

일 정	활 동 내 용	비 고
2025년 5월 ~ 7월	○ 특위 제1차 회의(5. 7.)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특위 제2차 회의(7. 25.) - 특위 활동계획 수립·채택 등 ○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 - 초고압 송전선로 대응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 등	
2025년 7월 ~ 2026년 4월	○ 초고압 송전선로 관련 현황 조사 및 정책자료 수집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황 및 계획 파악,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여론 조사,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책자료 수집 ○ 타 지자체 계획지 등 방문 및 협력 대응 - 타 지자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지 방문 및 공동 대응 협력 등 ○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대응 방안 마련 등 ○ 전북도 내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 정부·중앙정치권·한전·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주민 피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건의 및 설득 활동 ○ 언론·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국회 및 정부부처 방문, 타시도 벤치마킹 등 특위 활동사항 적극 홍보	
2025년 4월 중	○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2025년 5월 중	○ 특위 제3차 회의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본회의 보고	

IV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11명 】

(상임위-가나다순)

성명	소속위원회	전화번호	비고
 염영선 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읍2선거구)	휴) 010-2608-8387	
 나인권 부위원장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제1선거구)	휴) 010-6776-1931	
 김슬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휴) 010-9458-0626	
 권요안 위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완주군 2선거구)	휴) 010-3670-7092	
 임승식 위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읍1선거구)	휴) 010-3659-6333	
 김성수 위원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창1선거구)	휴) 010-3684-7976	
 박용근 위원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수선거구)	휴) 010-3653-2700	
 박정규 위원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실선거구)	휴) 010-8640-5464	
 윤수봉 위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완주1선거구)	휴) 010-6280-9509	
 윤정훈 위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주선거구)	휴) 010-8966-3832	
 전용태 위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안선거구)	휴) 010-4006-3152	

V 기타 참고자료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염영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11
----------	------

발의연월일 : 2025. 2. .

발 의 자 : 염영선 의원

찬 성 자 : 정종복 · 오현숙 · 이수진

강동화 · 황영석 · 박정규

최형열 · 윤수봉 의원(7명)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27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명 칭 :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 원 수 : 11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
- 대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사무범위 : 도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등

2. 제안이유

- 가. 전북 대부분 시·군 지역이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예정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정작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나.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혜택은 수도권과 일부 기업들이 누리지만, 정작 전북도민들은 무리한 수목 벌채로 인한 산림파괴, 주변 경관의 훼손, 생태계의 교란, 재해 시 농경지 피해, 지역주민과 가축에 대한 전자파 피해, 지가하락과 지역발전 저해 등 심각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
- 다. 이에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구성하여 전북도내 송전선로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도민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활동계획

- 가. 전북도내 송전선로 건설 관련 현황조사 및 여론 수렴
- 나. 송전선로 지중화 및 해상연결 HDVC 도입 등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 다. 송전선로 건설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 라. 지산지소 등 분산에너지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추진

4. 참고사항

가. 세부추진 계획 및 소요예산 : 별도 수립 시행

나.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위원회의 설치)
-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2. 관련 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하여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제안이유, 명칭, 활동기간, 위원수 및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후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의 종료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별도의 조항을 둔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날까지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부위원장 1명,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요청하여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 제2항에 따른다.

제1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 ② 제1항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